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상명대학교 (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모바일인증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기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한다.

- ①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의 서비스 운영 위탁

제4조 (재위탁 제한)

-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는 당해 재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위하여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또는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30일의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2. 상대방이 정부로부터 본 계약에 관한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상대방에게 파산 또는 회생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진행된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의 본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요재산의 양도, 압류, 가압류 등으로 상대방의 신용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6.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기타 거래정지를 당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 상대방의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어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을"이 수탁자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② 전항에 따른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기본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효력 발생 및 유효기간)

- ①본 계약은 “갑”과 “을”이 모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본 계약이 해지·종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종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때까지 유효하다.
- ②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 내에 발생한 본 계약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 및 제11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고, 소송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3월 01일

위탁자

업 체 명 : 상명대학교
주 소 : 서울시 중로구 홍지문2길 20
대표이사 : 백 웅 기 (인)



수탁자

업 체 명 : 한국모바일인증㈜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지하이시티 1601호~1606호
대표이사 : 박 중 진 (인)

